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7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이은주·강은미·배진교

심상정 · 장혜영 · 오영환

김민철 • 류호정 • 최춘식

양기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60% 가량은 경위로 퇴직하고 있으며,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일반직공무원(6급)에 비해 2 년 더 길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위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나 4 0% 승진 제한으로 인해 실제 승진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 근속(23.5년)에 비해 추가 단축이 필요 함.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6년 6개월"을 "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경찰청 |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
| 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 | |
| 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 | |
| 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 |
|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 | |
| 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 | 3 |
| 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 | |
| 서 <u>6년 6개월</u> 이상 근속자 | <u>6년</u> 이상 근속자 |
|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 4 |
| 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 | |
| 에서 <u>10년</u> 이상 근속자 | <u>7년</u>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